

심사보고서

2024. 11. 27.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53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4. 강남구청장(스마트정보과)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1. 27.)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감독 사항(안 제4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4. 9. 27.~2024. 10.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제정안은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 3. 5.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먼저 입법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의2호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법령의 위임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제정하여야 하므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됨.
- 안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사이버공격·위협”의 용어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를 재기재한 것으로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례에 다시 용어의 정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제2호의 “사이버보안 업무” 용어의 정의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제2호가목의 표현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는 동 규정 제3조제2호가목과 나목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고, 위임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른 용어의 정의를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는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 안 제4조(지도·감독 등)는 구청장이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였으나,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3조 및 제3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주체는 국가정보원으로서 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규정은 확인할 수 없음. 즉, 사이버보안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임.
 - 다만, 국가정보원 지침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상의 관련 규정에 “구청장”은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및 정보보안업무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상의 조례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입법 취지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국가정보원에서 제시한 2개의 참고 조례안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한 것이긴 하나, 위임조례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과 기관위임사무 성격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안 제4조)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참고 조례안 제1안을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53호

제안일자 : 2024.11.27.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자치법규안 필수 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수정주요내용

- 불필요한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2조)
-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 (안 제4조)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로,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시행”으로 한다.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2조로 한다.

안 제2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로 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p> <p>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p> <p>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생략)</p>	<p>제1조(목적) ----- 「사이버 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 2---- 시행----- ----- ----- -----.</p> <p><삭 제></p> <p>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원안과 같음)</p>

제4조(지도·감독 등) ① 서울특

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이버보안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삭 제>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추계 요약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 스마트정보과 통신7급 조성철(02-3423-5342)